

# 기안용

분류기호	도시 415 ~ 116	(전화번호) 75-6693	진 결 규 정 조 항 전 결 사 항
문서번호			
처리기간		제 2 부 서 장	시 장
시행일자	74. 1. 26.	결재 1974. 1. 24 제 2 부 서 장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b>도시제 10 호</b> </div>	협조 업무담당관(도시안정사) 시연과장 도시관리계장 공공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
기안책임자	권완	1974. 1. 26 감역권	조 지역계획계장
경유	각 안 장 조	반	동
수신		신	계
참조		시 장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            검 1974. 1. 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         </div>

제 목   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(영등포기계공업단지)

## 제 1 안

### 수신 내부결재

1. 전년부 과시제 209 호 (기. 4. 9) 로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던 영등포 기계 공업 단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 에 의거 번안과 같이 지적 승인 하고자 하오니 재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

구분	위 치	면적	비고
준공업지역	(영등포기계공업단지) 영등포동 100-8 부근	4 <sup>㎡</sup> 85.038	

\* 번정 되면 표시함도

첨부: 관계로인 부

제 2안 고지안

서울특별시 고지 제 1호

도시안사 1974.1.24 제 10 호	심사자	발령계장	인수

도시계획 용역지역 지정 (도시안) 관련  
 건설부 과 제 1호 (71.4.9)로 변경된

1. 당시와 내 도시계획 용역지역 및 ~~변경~~ ~~관련~~ 고지 제 209호 (71.4.9) 에 대한 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령 제 133호 (73.4.4) 에 의하여 이은 리한다.

2. 관계로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~~영등포~~ ~~관할~~ 구청 시민봉사소에 의해 하여 도시 소유자와 의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

1974. 1

### 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용역지역 지정

구분	위치	면적	비고
공공영역	(영등포기계공업단지) 영등포구 오수동 108 부근	85.038 <sup>m<sup>2</sup></sup>	

\*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~~영등포~~ ~~관할~~ 구청 시민봉사소에 보관함

제 3 안

수신 건설부장관 | 발신 시장  
제목 등 건

1. 건설부 제 209호 (기. 4. 9)로 도시계획 <sup>중대역의</sup> 일부 변경된 영등포기계공영단지 지역에 대한 지적승인을 변경한 과문사보 및 도면과 같이 하얏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과문사보 및 관계도면 각 1부  
제 4 안

수신 수석차장님 | 발신 시장  
제목 등 건

1. 계획 반-352호 (기. 4. 2) 와 관련된 일.  
2. 도시계획 영등포지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상기 대를로 지적등본한바있는 건설부 제 209호 (기. 4. 9) 에 대한 지적승인을 변경한 과문사보 및 도면 도시와 같이 결정 하얏기 등보하시 관제도를 개정 시인봉사안에 비치하여 등지수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라는 업무에 착수 했음을 함정.

첨부: 과문사보 및 관계도면 각 1부

\* 수신처: 영등포구청장, 시인외장, 공영리장

제 5 안

수신 홍무차장관 (공보차장) | 발신 시장  
제목 관(사)부 제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 
게재강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구분 : 2사

나. 관(시)보 게재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  
지정승인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부 : 2사문서본 2부 (1부) 끝